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561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82,43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4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52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B에 대하여 부동산투기혐의로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익산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 12. 1.경 B에 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9,605,800원(가산세 26,718,951원 포함)을 최종 납부기한을 2015. 12. 31.로 정하여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B의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147,767,36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은 2015. 10. 22.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채무초과상태의 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기 때문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1) 앞서 제시한 증거에다가 갑 제7 내지 10, 14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적극재산

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증거
1	이 사건 아파트	330,000,000	갑 15
2	익산시 C 묘지 73㎡	19,841,400	갑 17, 을 1-2
3	익산시 D 임야 4,760㎡ 중 442/4,760 지분	14,555,000	갑 18, 을 1-3
4	익산시 E 전 916㎡ 중 1/2 지분	29,679,000	갑 19, 을 1-4
5	익산시 F 잡종지 101㎡	56,000,000	갑 7, 을 1-5
6	익산시 G 잡종지 250㎡ 중 1,234/2,780 지분	41,000,000	갑 7, 을 1-6
7	익산시 H 도로 3㎡ 중 1,390/2,780 지분	1,118,180	을 1-7
8	전남 해남군 I 전 162㎡	3,393,900	갑 20, 을 1-8
9	전남 해남군 J 도로 70㎡	469,000	갑 20, 을 1-9
10	전남 해남군 K 도로 56㎡	375,000	갑 20, 을 1-10
11	전남 해남군 L 전 42㎡	879,000	갑 20, 을 1-11
12	M 주식회사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12,638,280	갑 16
합계		509,948,760	

나)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권의 종류	채무액(원)	증거
1	원고	이 사건 조세채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767,360	갑 2
2	N	근저당권	320,000,000	갑 7, 을 1-5
3	O단체	근저당권	144,564,000	갑 4, 8, 14
4	P조합	근저당권	40,000,000	갑 4, 9, 14
5	Q	근저당권	120,000,000	갑 4, 10, 14
6	R조합	근저당권	26,000,000	갑 7, 을 1-3, 4
합계			798,331,360	

2) 피고는, 익산세무서장이 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결정고지한 것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가산세의 납세의무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함께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B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13. 12. 31. 성립하였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의 소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피고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납입한 총보험료가 46,910,320원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M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합계 46,910,32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6. 12.경 위 종신보험을 해지하여 M으로부터 해약환급금으로 12,638,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종신보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고의 채권은 위 해약환급금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갑 제4,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2. 9. 12. Q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21. 11. 4.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 이외에도 2006. 9. 29. O단체 명의로 채권최고액 173,476,8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2012. 7. 17. P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제3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제1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144,564,000원, 제2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4,000만 원, 제3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1억 2,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6. 1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억 8,700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취소의 범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인 3억 8,700만 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304,564,000원(= 144,564,000원 + 40,000,000원 + 120,000,000원)을 공제한 82,436,000원(= 387,000,000원 - 304,564,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82,43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82,4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전라북도 익산시 아파트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익산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5층아파트

1층 813.1443㎡

2층 957.4716㎡

3층 957.4716㎡

4층 944.6466㎡

5층 944.6466㎡

6층 944.6466㎡

7층 944.6466㎡

8층 944.6466㎡

9층 944.6466㎡

10층 944.6466㎡

11층 944.6466㎡

12층 944.6466㎡

13층 944.6466㎡

14층 944.6466㎡

15층 944.646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1.전라북도 익산시 대 5480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0.1109㎡

(대지권의 표시)1 소유권대지권 54806.7분의 71.6159

